

—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2년 1월 24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2년 1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02년 1월 29일

제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조 훈 영

나. 제안이유

- 우리고장의 인물에 대한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
- 새마을운동, 자연보호운동의 정신을 계승·발전시켜 구미공동체 형성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.

다. 주요내용

【 명칭변경 】

- 제2조(명칭 및 위치)
 - 구미체육관 ⇒ 박정희체육관
- 제3조제1호(정의)
 - 체육시설이라 함은 구미시가 설치 운영하는 구미체육관 및 시민운동장을 말함. ⇒ 박정희체육관 및 시민운동장
- 별표1, 2, 4(사용료 구분)
 - 구미체육관 ⇒ 박정희체육관

라. 참고사항

- 천안시종합체육시설조례의 2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제66회 정례회시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임.
- 단순 명칭변경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타 조례나 상위법에 저촉 사항 없으며 유사한 조례로는 천안시종합체육시설조례중 『유관순 체육관』, 천안시아우내실내체육관조례 등이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